

# 창원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는 2021.10.20. 준공인가 고시되어 견본주택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분양사무실 방문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3도 이상일 경우. (당 분양사무실 입구 설치 체온계 기준)
  - 입장 시 손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등)에 불응할 경우.
-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점차의 실물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25.(금)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5.)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창원시 제외, 이하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서류제출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일반공급                                      |           |
|------------|---|-----------|
|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상인자 | 필요<br>2순위 |
| 세대주요건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X      | 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 조합의 사무실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5.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견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은 ‘창원롯데캐슬 프리미어’ 분양사무실( 055-541-2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구 분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검수<br>(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2년 03월 07일  | 2022년 03월 08일  | 2022년 03월 15일  | 2022년 03월 19일<br>~ 2022년 03월 24일 | 2022년 03월 26일<br>~ 03월 28일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분양사무실 방문<br>(10:00 ~ 16:00)      | 분양사무실 방문<br>(10:00 ~ 16:00)               |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구비서류 지참 방문<br>※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 ■ 분양사무실<br>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64 ,3층<br>(회원동)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함(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영업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도시재생과 - 2214호(2022.02.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8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25층 12개동 총 999세대 중 **일반공급 39세대**

■ **입주시기** : 2022년 03월 28일 이후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 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br>대지지분 | 총 공급<br>세대수 | 일반분양<br>세대수 |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
| 민영<br>주택 | 2022000094 | 01 | 049.5733        | 49   | 49.5733                 | 17.9478    | 67.5211  | 29.5675             | 97.0886  | 29.57       | 5           | 5           |
|          |            | 02 | 059.9806        | 59   | 59.9806                 | 21.9896    | 81.9702  | 35.7749             | 117.7451 | 35.90       | 9           | 9           |
|          |            | 03 | 066.6357        | 66   | 66.6357                 | 23.5749    | 90.2106  | 39.7443             | 129.9549 | 39.51       | 3           | 3           |
|          |            | 04 | 084.9302A       | 84A  | 84.9302                 | 30.1281    | 115.0583 | 50.6559             | 165.7142 | 50.40       | 13          | 13          |
|          |            | 05 | 084.9485B       | 84B  | 84.9485                 | 29.3991    | 114.3476 | 50.6669             | 165.0145 | 50.08       | 9           | 9           |
| 합 계      |            |    |                 |      |                         |            |          |                     |          |             | 39          | 39          |

-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반올림 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 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반올림 하였고, 각각의 면적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다음 소수점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순번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동           | 호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세대당분양가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내     |
| 1    | 49    | 5           | 109동        | 601호, 1401호         | 66,284,000  | 160,716,000 | 227,000,000 | 22,700,000 | 204,300,000 |
|      |       |             |             | 2001호, 2301호, 2501호 | 67,744,000  | 164,256,000 | 232,000,000 | 23,200,000 | 208,800,000 |
| 2    | 59    | 9           | 101동        | 201호                | 75,336,000  | 182,664,000 | 258,000,000 | 25,800,000 | 232,200,000 |
|      |       |             |             | 801호                | 77,964,000  | 189,036,000 | 267,000,000 | 26,700,000 | 240,300,000 |
|      |       |             | 103동        | 1601호, 2201호, 2401호 | 84,680,000  | 205,320,000 | 290,000,000 | 29,000,000 | 261,000,000 |
|      |       |             |             | 1001호, 1101호        | 82,052,000  | 198,948,000 | 281,000,000 | 28,100,000 | 252,900,000 |
|      |       |             | 110동        | 2501호               | 83,804,000  | 203,196,000 | 287,000,000 | 28,700,000 | 258,300,000 |
|      |       |             |             | 701호                | 82,052,000  | 198,948,000 | 281,000,000 | 28,100,000 | 252,900,000 |
| 3    | 66    | 3           | 110동        | 2202호, 2502호        | 92,710,000  | 224,790,000 | 317,500,000 | 31,750,000 | 285,750,000 |
|      |       |             |             | 111동                |             |             |             |            |             |
| 4    | 84A   | 13          | 102동        | 905호                | 117,968,000 | 286,032,000 | 404,000,000 | 40,400,000 | 363,600,000 |
|      |       |             |             | 2102호               | 121,764,000 | 295,236,000 | 417,000,000 | 41,700,000 | 375,300,000 |
|      |       |             | 103동        | 502호                | 113,296,000 | 274,704,000 | 388,000,000 | 38,800,000 | 349,200,000 |
|      |       |             | 104동        | 803호                | 119,136,000 | 288,864,000 | 408,000,000 | 40,800,000 | 367,200,000 |
|      |       |             | 105동        | 1002호, 1202호        | 117,968,000 | 286,032,000 | 404,000,000 | 40,400,000 | 363,600,000 |
|      |       |             | 107동        | 601호                | 115,632,000 | 280,368,000 | 396,000,000 | 39,600,000 | 356,400,000 |
|      |       |             |             | 2101호               | 117,968,000 | 286,032,000 | 404,000,000 | 40,400,000 | 363,600,000 |
|      |       |             | 108동        | 1102호               | 116,800,000 | 283,200,000 | 400,000,000 | 40,000,000 | 360,000,000 |
|      |       |             |             | 1105호               | 117,968,000 | 286,032,000 | 404,000,000 | 40,400,000 | 363,600,000 |
|      |       |             | 110동        | 1905호               | 120,596,000 | 292,404,000 | 413,000,000 | 41,300,000 | 371,700,000 |
|      |       |             |             | 2103호               | 119,136,000 | 288,864,000 | 408,000,000 | 40,800,000 | 367,200,000 |
| 111동 | 1605호 | 120,596,000 | 292,404,000 | 413,000,000         | 41,300,000  | 371,700,000 |             |            |             |
| 5    | 84B   | 9           | 101동        | 1904호               | 119,428,000 | 289,572,000 | 409,000,000 | 40,900,000 | 368,100,000 |
|      |       |             | 102동        | 1104호, 1204호        | 117,092,000 | 283,908,000 | 401,000,000 | 40,100,000 | 360,900,000 |
|      |       |             |             | 1002호               | 114,756,000 | 278,244,000 | 393,000,000 | 39,300,000 | 353,700,000 |
|      |       |             | 107동        | 1702호, 2502호        | 117,092,000 | 283,908,000 | 401,000,000 | 40,100,000 | 360,900,000 |
|      |       |             |             | 2004호               | 117,092,000 | 283,908,000 | 401,000,000 | 40,100,000 | 360,900,000 |
|      |       |             | 109동        | 1004호               | 114,756,000 | 278,244,000 | 393,000,000 | 39,300,000 | 353,700,000 |
|      |       |             |             | 2204호               | 117,092,000 | 283,908,000 | 401,000,000 | 40,100,000 | 360,900,000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유의사항

- 본 주택은 해당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의 사용승인을 받은 준공후 분양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포함한 가격으로 각 세대별 선택이 불가하고**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옵션 품목이 설치된 세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각 세대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품목은 세대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 사실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 반올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이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및 실물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 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2.25. 현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li> <li>※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li> </ul>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본인의 청약제한사항 조회요망</li>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li> <li>•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 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함.</li> </ul> </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증액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li> <li>-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접수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li> <li>-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감액사유 시 변경 불필요)</li> <li>-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li> <li>- 청약 예금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4.3.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로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합니다.</li> <li>② 위 내용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ul> </li> </ul> <p>※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li> <li>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li> <li>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4)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5)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통장효력이 상실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ol>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내 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2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li> </ul>   |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당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점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9.1.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9.1.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

|                      |  |
|----------------------|--|
|                      | <p>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의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이상 ~ 9년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             |      | 1년 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20 |   |
|             |      | 1년이상 ~ 2년미만          | 4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 |   |
|             |      | 2년이상 ~ 3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 |   |
|             |      | 3년이상 ~ 4년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             |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             |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               |    |   |
| 총점          | 84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09월 0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09월 0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 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일반공급 | 1순위   | 2022.03.07.(월) 09:00~17:30 |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2.03.08.(화) 09:00~17:30 |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일반공급<br>공동서류            |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⑧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⑨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⑩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가점제<br>당첨자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br>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br>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br>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br>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녀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제3자<br>대리인 신청<br>시 추가사항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③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 자      |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br>•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비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일반공급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03.15.(화)</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03.26.(토) ~ 2022.03.28.(월) (10:00~16:00)</li> <li>• 장소 : 분양사무실<br/>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64 ,3층(회원동)</li> </ul>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명단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2022.03.15.(화) ~ 2022.03.24.(목) (10일간)   |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2.03.1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br/>*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에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5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b>2022.03.26.(토) ~ 2022.03.28.(월)</b> (10:00~16:00) | 분양사무실<br>경상남도 마산회원구 복성로164, 3층(회원동)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예비입주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서 최초로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함.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 구분 |     | 구비 서류                   | 발급 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본인<br>계약 시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본인    |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     |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영수증) | -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br>※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대리<br>계약 시 |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본인    | • 양식 홈페이지 게재 또는 당사 사무실에 비치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위임장                     | 본인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정당당첨자) : 2022.03.26(토) ~ 2022.03.28.(월) 3일간 (10:00~16:00)
- 계약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164, 3층(회원동)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분양대금 관리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국민은행 | 465101 - 01 - 267332 |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롯데) |

- ※ 계약금과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분양대금관리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동호수 7자리+계약자명 →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입금)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공급계약체결 시 부여됨)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납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 관련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주택은 2021년 10월 20일 준공인가완료된 아파트입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외부 시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전기실, 발전기실의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운전 시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공 동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타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 상기 분양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세대에는 옵션이 설치 될수 있으며, 설치 품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에서 그림보다 다소 두껍게 시공되었을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물주택을 방문하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세대별로 (±10mm)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및 현관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단지 도로 불빛으로인해 일부세대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주변도로 인접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될 각종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부 외부 돌출공간의 활용은 안전상 불가하며, 개별세대의 물품비치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재활용 창고, 생활폐기물보관소, DA, 자전거보관소, 조경 식재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위치가 일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지시설, 주차 출입구, 주차장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및 차량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신축완료 현장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Top Light, D/A)이 단지 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당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 환풍기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각종 식재 및 시설(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조명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 등은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 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었으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과 관할소방서의 지도에 따라 공용공간의 창호 개폐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선택옵션에 따라 천장고, 일부 마감사양 및 마감 적용부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어있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좌우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및 천장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 좌우 측면 및 배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 하부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욕실장의 배면에는 별도의 타일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세대별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건물 준공 후의 관리는 주택법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창원시, 사업주체 및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부동산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청약시점에 따라 향후 청약조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당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동.세대는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하며, 해당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키는 계약자가 입주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 일정을 신청하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해당세대 및 단지 내외곽 주변환경(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등의 현황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내외곽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업체,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 조합과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난 공간 내에는 피난 공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자 및 시공사 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7 기타 계약자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 구 분     | 회사명           | 감리금액          | 비 고 |
|---------|---------------|---------------|-----|
| 건축감리    | (주)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 2,980,767,900 |     |
| 소방,통신감리 | (주)유일방재엔지니어링  | 214,500,000   |     |
| 전기감리    | (주)케이아이씨      | 522,340,990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체 | 회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608-82-12612 |
| 시공사  | 롯데건설 주식회사        | 110111-0014764       |

■ 분양사무실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64 , 3층(회원동)

■ 분양문의 : 055-541-2000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